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
----------	-----

발의년월일 : 2004년 12월 일

발 의 자 : 정상혁의원외 8인

☐ 제안이유

-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2000.8.23)되어
정비가 필요한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고(제2조, 제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 8. 23.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제9조)

☐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관계법령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3호중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을
“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으로 한다.

제9조중 “ 제87조 내지 제92조 ” 를 “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u>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u>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운송 사업을 말한다. 3. (생 략)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1일 운행횟수가 왕복5회 이하인 노선 중에서 이용승객이 적어 운송사업자가 입은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u> 시내(농어촌)버스의 노선</u>을 말한다. 제4조(대중교통지원)① (생략) 1. ~ 2. (생 략) 3. <u>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u>의 공동시설 및 교통안전관리공단시설의 확충·개선 4. ~ 6. (생 략) 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4조제1항 제2호의 운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 절차는 <u>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내지 제92조</u>를 준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u>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u> 3. (현행과 같음) 4. <u>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u> 제4조(대중교통지원)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u>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u>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u>을 ..
--	--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5 (손실보상금청구서등)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손실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23>

제41조의6 (손실보상금의 산출 등) ①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1킬로미터당 운임×A×(B - 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실제승차인원 : 시·도지사가 당해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

<본조신설 2000.8.23>

제41조의7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12

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23〉

제41조의8 (손실보상대상노선의 제외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3〉

제87조 내지 제92조 삭제 <2000.8.23>